

2023년도 무형문화재위원회

전통기술분과 제3차 회의록

■ 회의일시 : 2023. 5. 25.(목), 14:00

■ 장 소 : 문화재청 대회의실

■ 출석위원 : 김삼기(위원장), 김정희, 서도식, 임승택
진명(정혜린)

■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: 이하 자료와 같음

무 형 문 화 재 위 원 회

1.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라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·의결에서 제척됩니다.

제1호.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(당사자가 법인·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,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)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

제2호.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(당사자가 법인·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)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

제3호.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, 진술, 자문, 연구,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

제4호.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

아울러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·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

위원은 위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 해당 시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·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습니다.

2. 또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무형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라 회의내용은 기록·녹취되며 회의 결과는 공개됨을 알려드립니다.

3. 아울러 무형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7조에 따라 의결 방식은 거수 또는 기명 투표 중에 선택하여야 하며, 과반수의 찬성에 따라 의결됨을 알려드립니다.

국 가 무 형 문 화 재 종 목 지 정 업 무 절 차

업무처리 절차

구체적인 실행 내용

○ 시·도지사 추천 접수(전년도)

=

○ 광역지자체 대상 신규 종목 지정 추천 접수



○ 관계전문가 검토(전년도)

=

○ 해당 종목 관계전문가 검토 실시
- 신규 종목 지정 타당성 여부 조사



○ 무형문화재위원회 검토

=

○ 신규 종목 지정 타당성 여부 조사결과 검토



○ 국가무형문화재 지정(인정) 조사
계획 수립

=

○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
○ 문화재청 홈페이지 게시(매년 1월 31일까지)



○ 조사단 구성

=

○ 해당분야 무형문화재 전문위원 및 관련 전문가 3인
이상으로 구성
○ 관련 학회 등 추천, 무형문화재위원회 검토, 제척
여부 확인 후 확정
※ 연구용역으로 진행 시 해당 절차 생략



○ 종목 지정가치 조사 실시

=

○ 전승가치(역사성, 예술성, 학술성, 대표성 등) 및
전승환경(사회문화적 가치, 지속가능성) 등 조사



○ 무형문화재위원회 검토

=

○ 지정가치 조사 결과 검토
- 종목만 지정 시 : 지정 예고 여부 검토
- 보유자(보유단체) 인정 시 : 인정 절차 진행
※ 보유자(단체) 인정 절차 추진 시 인정검토 완료 후 관보 공고



○ 종목 지정 예고 관보 공고

=

○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예고(30일) 및 의견 수렴
※ 예고가 끝난 날부터 6월 이내에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
거쳐 종목 지정 여부를 결정



○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

=

○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심의



○ 종목 지정 관보 고시

=

○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고시

국 가 무 형 문 화 재 보 유 자 인 정 업 무 절 차

업무처리 절차	구체적인 실행 내용
○ 국가무형문화재 지정(인정) 조사 계획 수립	○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 ○ 문화재청 홈페이지 게시 (매년 1월 31일까지)
↓	
○ 보유자 인정조사 신청자 공모	○ 보유자 인정조사 신청 공모 게시, 신청서 접수
↓	
○ 조사단 구성	○ 해당분야 무형문화재 전문위원 및 관련 전문가 3인 이상으로 구성 ○ 관련 학회 등 추천, 무형문화재위원회 검토, 제척 여부 확인 후 확정
↓	
○ 보유자 인정조사(1단계) 실시	○ 서면조사(신청서 및 동영상 자료 포함)
↓	
○ 무형문화재위원회 검토	○ 1단계 조사 결과 검토, 2단계 조사대상자 선정
↓	
○ 보유자 인정조사(2단계) 실시	○ 현장조사(실연) 및 면담
↓	
○ 무형문화재위원회 검토	○ 2단계 조사 결과 검토, 3단계 조사대상자 선정
↓	
○ 보유자 인정조사(3단계) 실시	○ 심층 기량조사(실연)
↓	
○ 무형문화재위원회 검토	○ 3단계 조사 결과 검토, 보유자 인정 예고 검토
↓	
○ 보유자 인정 예고 관보 공고	○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예고(30일) 및 의견 수렴 ※ 예고가 끝난 날부터 6월 이내에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유자 인정 여부를 결정
↓	
○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	○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심의
↓	
○ 보유자 인정 관보 고시	○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고시 - 당사자 및 해당 시도 통지 - 인정서 교부, 전승지원금 지급

목 차

【심의사항】

- | | | |
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1 | 국가무형문화재 ‘완초장’ 보유자 명예보유자 인정 심의 | |
| 2 | 국가무형문화재 ‘소반장’ 전승교육사 인정 심의 | |
| 3 |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심의 | |

【검토사항】

- | | | |
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1 | 국가무형문화재 ‘악기장(현악기 제작)’ 보유자 인정 예고 검토 | |
| 2 | 국가무형문화재 ‘갯일(총모자)’ 보유자 인정조사(1단계) 결과 검토 | |
| 3 | 국가무형문화재 ‘갯일(입자)’ 보유자 인정조사(1단계) 결과 검토 | |
| 4 | 국가무형문화재 ‘갯일(양태)’ 보유자 인정조사(1단계) 결과 검토 | |
| 5 | 국가무형문화재 ‘망건장’ 보유자 인정조사(1단계) 결과 검토 | |
| 6 | 국가무형문화재 ‘옥장’ 보유자 인정조사(1단계) 결과 검토 | |
| 7 | 국가무형문화재 ‘칠장’ 보유자 인정조사(1단계) 결과 검토 | |
| 8 | 인류무형유산 차기 신청 종목 선정 합동분과 소위원회 구성 검토 | |

심 의 사 항

1. 국가무형문화재 ‘완초장’ 보유자 명예보유자 인정 심의

가. 제안사항

국가무형문화재 ‘완초장’ 보유자의 명예보유자 인정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제안사유

- 국가무형문화재 ‘완초장’ 보유자 이상재를 명예보유자 인정 여부에 대한 심의를 부의하는 것임
- 추진경과
 - ('23.1.31..) 보유자 이상재의 명예보유자 인정 신청 접수
 - ('23.3.16.) 제2차 무형문화재위원회 검토(원안가결)
 - ('23.3.22.~'23.4.20.) 명예보유자 인정 예고(관보 공고)
 - 예고사유 : 국가무형문화재 완초장 보유자 이상재는 그동안 해당 종목의 전승을 위하여 헌신하여 왔으나, 건강상의 이유로 정상적인 전승교육 및 전승활동이 어려워져 명예보유자로 인정 예고함
 - 예고결과 : 의견없음

다. 주요내용

1) 지정현황

- 지정명칭 : 국가무형문화재 ‘완초장’
- 지 정 일 : 1996.5.1.
- 전승자 현황 : 보유자 1명, 전승교육사 2명

구분	성명(성별, 생년)	인정일	기·예능
보유자(1명)	이상재(남, '43년생)	1996.5.1.	완초장
전승교육사(2명)	양인숙(여, '46년생) 유선옥(여, '54년생)	2004.3.20.	완초장

2) 명예보유자 신청내용

- 대 상 자 : 완초장 보유자 이상재(남, '43년생)
- 신청사유 : 보유자 본인이 명예보유자 인정 요청

라. 검토의견

- 그 간의 경과와 인정예고 결과를 참고하여 명예보유자 인정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마. 의결사항

- 부결함
 - 이상재 보유자 사망(2023.5.24.)에 따른 명예보유자 인정을 부결함
- 의결정족사항 : 출석 5명, 부결 5명

사. 특기사항

- 없음

2. 국가무형문화재 ‘소반장’ 전승교육사 인정 심의

가. 제안사항

국가무형문화재 ‘소반장’ 전승교육사 인정 건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제안사유

- 2023년도 국가무형문화재 지정(인정) 조사 계획에 따라 ‘소반장’ 전승교육사 인정조사를 추진하고, 전승교육사 인정 여부에 대한 심의를 부의하는 것임

다. 주요내용

1) 지정현황

- 지정명칭 : 국가무형문화재 ‘소반장’
- 지 정 일 : 1992.11.10.
- 전승자 현황 : 보유자 2명, 전승교육사 1명

구분	성명(성별, 생년)	인정일	기·예능
보유자(2명)	김춘식(남, '36년생) 추용호(남, '50년생)	2014.9.16.	소반제작
전승교육사(1명)	이종덕(남, '59년생)	1996.2.1.	소반제작

2) 추진경과

- ('23.1.17.) 2023년도 국가무형문화재 지정(인정) 조사 계획 수립
- ('23.2.23.) 국가무형문화재 소반장 전승교육사 추천서 제출(보유자→문화재청)
- ('23.4.5.) 소반장 전승교육사 인정조사 사전회의
 - 조사대상자(1명) 김영민('71년생/'17.12.1. 이수)

3) 인정조사 개요

- 조사일자 : '23.5.15.(월) 10:30~16:30
- 조사장소 : 전남 나주 조사대상자 공방
- 조 사 자 : 관계전문가 3명
- 조사대상자(1명) : 김영민
- 조사내용

- 「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·심의에 관한 규정」(문화재청 훈령 제623호, 2022.12.14.)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 전승교육사 인정조사의 조사지표(개인지표)에 따라 조사 실시
- 조사방법('23.4.4.5. 조사자 사전회의 의결에 따름)

라. 검토의견

-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소반장 전승교육사 인정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람

마. 의결사항

- 가결함
 - 김영민을 국가무형문화재 소반장 전승교육사로 인정함
- 의결정족사항: 출석 5명, 가결 5명

바. 특기사항

- 없음

3.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심의

가. 제안사항

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 대상 종목 지정 및 지정절차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제안사유

-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 전통기술분야 대상 종목 선정을 위한 평가를 실시하고, 그 결과를 토대로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 지정 여부와 지정절차에 대하여 부의하는 것임

다. 주요내용

1) 추진배경

- 목적 : 취약종목의 다수를 차지하는 전통기술종목 중 전수교육주체의 부재로 종목의 전형상실 및 전승단절 위험이 심화된 종목에 대해, 보다 강력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한 종목의 자생력 강화

* 「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13조, 「같은 법 시행령」 제15조

2) 추진경과

- ('22.10월) 전통기술분야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 제도 운영방안 연구
- ('22.10월) 국가무형문화재(전통기술 종목) 전승실태 현황조사
- ('23.3월)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 지정 계획 보고
- ('23.4월)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취약종목 중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 종목 선정 사전회의
 - 현장평가 대상 2개종목 선정(악기장(편종·편경), 백동연죽장)
- ('23.5월) 2개 종목 대상 현장 평가

3) 긴급보호 대상 종목 지정 개요

- 사전회의
 - 대상 선정기준: 보유자 장기부재종목, 초고령 보유자, 극소수 이수자
 - 우선 검토 대상 : 6개 취약종목
 - 나주의 셋골나이, 바디장, 배첩장, 백동연죽장, 악기장(편종편경), 전통장

- 평가결과

-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 추천종목 : 나주의 셋골나이, 바디장, 백동연죽장, 악기장(편종·편경) 등 4종목
- 현장조사 대상선정 : 악기장(편종·편경), 백동연죽장

○ 현장평가

- 평가 종목 : 악기장(편종·편경), 백동연죽장
- 평가 방법 : 소멸 위험성, 전형 상실 및 전형 복원 가능성 등 중점평가
- 심사위원별로 종목 전승현장(공방 등)을 방문하여 전승환경 및 여건 등 조사
- 전승자의 전승의지 및 능력 등 평가
- 평가결과 : 전승환경이 구조적으로 회복되기 어렵고 사회적 요구가 작아 악기장(편종·편경제작), 백동연죽장에 대한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필요

라. 검토의견

- 종목 자체의 소멸 등 시급한 위기에 빠진 종목을 ‘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’로 지정하여,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. 또한 정책의 효과성 및 지속성 등을 고려하여 종목의 취약성과 함께 종목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와 향후 활성화 가능성 등도 함께 고려하여 종목을 지정 추진하고자 함
- ※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 예능종목 지정 후 이수자 배출 (가사 1, 발탈 8, 줄타기 2)
- 사전회의 및 현장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여부를 심의하여 주시기 바람
- 아울러,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의거,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 지정절차 중 지정예고 절차를 생략하고자 하니 이에 대해서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람

마. 의결사항

○ 가결함

- 나주의 셋골나이, 바디장, 백동연죽장, 악기장(편종·편경)을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 종목으로 지정함
-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의거,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 지정절차 중 지정예고 절차를 생략함

- 의결정족사항 : 출석 5명, 가결 5명

바. 특기사항

- 없음

검 토 사 항

1. 국가무형문화재 ‘악기장(현악기 제작)’ 보유자 인정 예고 검토

- 「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2조(회의록 비공개)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비공개함

2. 국가무형문화재 ‘갓일(총모자)’ 보유자 인정조사 1단계 조사결과 검토

- 「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2조(회의록 비공개)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비공개함

3. 국가무형문화재 ‘갯일(입자)’ 보유자 인정조사 1단계 조사결과 검토

- 「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2조(회의록 비공개)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비공개함

4. 국가무형문화재 ‘갯일(양태)’ 보유자 인정조사 1단계 조사결과 검토

- 「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2조(회의록 비공개)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비공개함

5. 국가무형문화재 ‘망건장’ 보유자 인정조사 1단계 조사결과 검토

- 「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2조(회의록 비공개)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비공개함

6. 국가무형문화재 ‘옥장’ 보유자 인정조사 1단계 조사결과 검토

- 「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2조(회의록 비공개)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비공개함

7. 국가무형문화재 ‘칠장’ 보유자 인정조사 1단계 조사결과 검토

- 「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2조(회의록 비공개)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비공개함

8. 인류무형유산 차기 신청종목 선정 합동분과 소위원회 구성검토

- 「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2조(회의록 비공개)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비공개함